

IAF 마크 라이선스 협약

IAF 마크 사용을 위한 국제인정기구포럼(IAF Inc.)과 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서명기관간 협약

1. 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마크 또는 IAF MLA 마크로 명시된 상표의 소유권은 국제인정기구포럼("IAF")에게 있다.

2. 한국제품인정기구, 마크 사용 요청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 (Licensee)"이라 한다)의 본사 또는 사업장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기술표준원 KAS 사무국) 이며 IAF 마크 사용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다. 인정기관은 IAF MLA 회원 요건 및/또는 IAF 인정기관 회원 요건을 유지하고, 아래에 제시된 조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IAF는 다음의 조건 및 제한사항에 따라 본 협약서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부터 신청기관에 대해 IAF MLA 마크 사용을 허가한다.

- (a) 인정기관은 IAF ML 2:2004 IAF 마크 사용에 관한 일반 원칙과 인정기관이 서명한 IAF MLA 의 범위에 따라 IAF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 (b) IAF MLA 마크의 복제는 IAF가 제공한 공인 사본을 사용하여야 하며, 마크의 인쇄 시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i) 흑백 또는 팬톤 컬러 2747(짙은 청색)과 팬톤 컬러 299 (엷은 청색)를 사용
 - ii) 뚜렷하게 대비되는 배경색
 - iii) IAF 마크의 모든 문구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크기로 사용하되, IAF 마크의 폭이 최소 20mm 이상 이어야 함
- (c) 허가 받은 용도에 대한 인정기관의 IAF 마크 사용권은 독점적 권한이 아니다;
- (d) 라이선스 협약이 허가한 IAF MLA 마크의 사용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기 IAF 마크를 사용에 관한 인정기관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e) 인정기관은 인정서와 인쇄된 편지지 윗부분에 IAF MLA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주: IAF ML 2에서 IAF 마크와 IAF 인정기구의 로고를 함께 붙여 제시한 것은 활용 사례일 뿐이며, 인정서에 표시되는 방법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 IAF마크는 인정기관의 로고와 “결합하여” 사용되며, 인정기관 로고의 아래쪽 또는 인정서 내에서 인정기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 (f) 인정기관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IAF 마크를 문서에 사용할 수 없다.
- i) 인정기관의 이름 또는 로고가 한 장에 포함되어 있고, 이름과 로고의 크기가 거의 유사한 경우,
 - ii) 인정기관이 IAF의 서명기관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 iii) 해당 문서의 내용 전체가 인정기관의 인정활동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주: 여기서 문서에는 모든 형식과 유형의 매체가 포함된다.

- (g) 수시로 또는 때때로 IAF가 제공하는 지침, 조건, 품질규격 및 IAF 마크 요건을 인정기관은 IAF 마크 사용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h) IAF가 요청하는 경우, 인정기관은 사용한 IAF 마크 견본을 IAF에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견본은 인정기관에 대한 서명기관간 평가 및 재평가 (peer evaluation reassessment) 기간 또는 기타 IAF의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한다.
- (i) 인정기관은 인증/등록 기구(CRB)가 IAF 마크를 오로지 인정기관의 상표 또는 동등한 마크 (예를 들어, 적절한 프로그램 마크) 그리고 인정번호와 함께 인증/등록 기구의 편지지 윗부분, 인정서, 인정 인증서, 업무의 인용, 광고, 웹사이트, 기타 문서에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사용 영역은 IAF-ML-05-002*에 규정된 IAF 협정에 따라 인증기관과 인정기구가 체결한 서면 협약과 인정기관이 자신의 상표 사용에 관해 서면으로 규정해 놓은 조건의 대상이 되며, 인정을 획득한 인증/등록 기구는 해당 규정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IAF-ML-05-002 논점 2

마크 사용을 허가 받은 IAF MLA 서명기관과 인정된 인증/등록 기구간의 IAF 마크 사용에 대한 협약

- (j) 인정기관은 IAF 마크를 제품 또는 제품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k) 인정기관은 인증 또는 등록된 제품, 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IAF가 승인한 것으로 해석되도록 IAF 마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l) 인정기관은 본 협약서의 규정을 준수하고 인정기관 스스로 또는 인증기관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IAF 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IAF 마크의 사용을 모니터 하고, 부적절한 사용 시에는 IAF 마크 사용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m) IAF는 허가 받은 IAF MLA 서명기관 및/또는 인증기관의 IAF 마크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 (n) 인정기관은 IAF 마크에 대한 소유권, 권리, 이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 (o) 인정기관은 IAF 마크와 관련된 IAF의 권리를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IAF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협조한다.
- (p) 인정기관은 IAF 마크에 대한 IAF의 소유권, 권리, 이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IAF 마크 사용에 관한 본 협약서는 다음의 경우 종료될 수 있다.

- (a)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 (b) 본 협약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IAF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 (c) 인정기관의 IAF MLA 서명기관 자격 및/또는 IAF 인정기관의 회원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IAF는 종료할 수 있다.
- (d) 인정기관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한 후, IAF가 종료할 수 있다..
- (e) IAF에 적절한 방식으로 통보한 후, 인정기관이 종료할 수 있다.

5. 인정기관은 본 협약서에 의거, 인정기관의 위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클레임, 배상책임, 청구, 소송, 조치의 원인, 비용과 경비(소송 실비를 포함)에 대해 IAF, IAF의 이사진, 임원, 피고용인 및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을 보호하고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IAF 마크 사용을 위한 국제인정기구포럼(IAF Inc.)과 IAF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 서명기관간 협약서 끝.

이에 합의하여 서명함.

인정기관 명칭: Korea Accreditation System

대표자 서명:

대표자 성명: 서광현

대표자 직위: 한국제품인정기구장

서명 일자:

서명

IAF 회장

서명 일자:

IAF 마크 라이선스

다음 IAF MLA 프로그램에 대한 IAF 마크 사용을 허가함: (IAF 사무총장이 추가)